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





유보통합, 평등한 출발선 위한 해법 될까?

장애영유아 교육 · 보육 현황과 과제 중심으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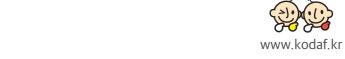
유보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1995년 이래,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보통합'은 교육, 보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임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4대 정당이 모두 유보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음

이번 달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 이행에 대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발표하여 전 교육·보육계, 특히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와 교육·보육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그간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유보통합 추진 계획 및 과정에서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함







"만 0~5세 보육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약 -



03

새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 장애영유아에게 왜 중요할까?



이미지 출처: 뉴스웨이

▮ 지난한 역사 지닌 '유보통합' 논의, 다시 화두로

- 지난 20대 대선 당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공약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유보통합'으로 당시 여야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음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 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임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다 보니 법령, 관리체계, 기관종류, 교사 양성 등 이원적 체제 속에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 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음

- 유보통합 논의는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때 처음 거론되었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으로 처음 내세워졌음
- 이명박 정부에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도입되면서 유아 교육에서는 보육의 기능을, 보육에서는 유아 교육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그 성과로 인해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음
- 박근혜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3단계 추진방안까지 확정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음
- 문재인 정부 역시 국정기획위원회(인수위원회 전신)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 까지 했지만 국정과제로 선정되지 않았음
- 결국 역대 정부는 부처 일원화, 관련 법령 정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격차 해소',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인력·인프라 확대에만 방점을 찍어왔음
- 20년 넘게 이어져온 유아교육·보육계의 숙원 과제 '유보통합',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풀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 '단계적 유보통합' 국정과제 선정

- 지난 5월 3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110개 국정과제'에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할 계획이 담겼음
- 이에 앞서 지난 3월, 교육부가 주최한 '제5차 교육정책 열린 대화: 미래세대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통합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소개된 '유아· 보육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이 현 정부 유보 통합 로드맵의 기본 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 주목을 받고 있음

고림1 미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 3단계 단계별 로드맵

	유보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조성기 완전두		무상교육실현기		유아교육 기간학제화를 위한 질적 도약기	
2022	2 새정부 시작	202	6년 이후(가안)	> 쿡	당립 이용률약 80% 시점	
			유아학교 체제하의 완전무상교육 실현		유아학교 체제 하의 4-5세 의무교육실현	
	기반 조성	[7]	완전무상교육 실	현기	기간학제화를 위한 도약기	
제도	유아학교 명칭변: 유아교육지원특별회 유아학교 학교 정체: 학급당 유아수 14명	계 체계 개편 성, 체계 안착	표준유아교육비 수 재정지원	-준의	유야학교를 통한 의무교육단계 실현법개정) 만 5세부터 단계적 실현 가능	
전달체계	유보일원화 추진(추진단 교육청 유아교육 유·보 업무 담당국	과 독립	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 /지자체 협업·유아학교 체제 구축		국가교육위원회·교육청 /지자체 협업·유아학교 체제 구축(평생교육시스템 구축)	
교육과정	누리과정 명칭 변경 (유아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정, 미래담론 포함)		유아학교 교육과정 (0-2세 포함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포함)		유아학교 교육과정 (0-2세 포함시 영유아학교 교육과정 포함, 0-3세는 무상)	
예산/ 재정지원	교육부, 바우차 체제개편 완 단계적 무상교육 (2023년 0 유아부문무상교육 지	료시 실현 가능 후)	교육부, 사립 재정결	함보조금	교육부, 사립 재정결함보조금	
교사자격/ 연수	유보일원화시 유 자격 취득을 위한 기 (영유아학교 교사자: 관련 연수 2	준안 마련 등 격제도 마련),	유아학교 교원 제도로	일원화	유아학교 교원 제도로 일원화	

출처: 박창현·김근진·윤지연(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 해당 안은 올해부터 착수해 4년 뒤 달성을 목표로 '기반조성기(1단계)-완전무상교육 실현기 (2단계)-기간학제화를 위한 도약기(3단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기'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즉시 보육 업무를 교육부가 이관 받아 부처를 일원화하고,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함
- 부처 일원화 시기는 인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지금이 가장 최적인 시기이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실·국급으로 격상하고 청소년 까지 포함한 평생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함
- '[2단계] 완전 유아무상교육 실현기'에는 내년

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로 교사 자격, 시설, 법률, 거버넌스, 행·재정 등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3단계] 유아교육 기간 학제화를 위한 질적 도약기'는 2026년 이후로, 완전 무상 교육·보육 이 실현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통합된 가칭 영유아학교, 또는 영아반·유아반 병행 체계로 재편하는 것임
- 특히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국고로 마련되는 누리과정 특별 회계로 충당하되, 2026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영·유아학교 운영 예산을 모두 충당하게 하자고 제안함
- · 내국세: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과의 교역에서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제외한 세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장애유아 교육·보육 환경에 더 큰 변화 기대

- 새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특히 장애유아교육· 보육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더욱 중요한 화두가되고 있음
- 장애 발견 및 조기 개입 측면에서 영유아기 보육, 교육 환경은 장애를 지닌 아동에게 더욱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침
- 아울러 장애영유아는 비장애영유아보다 일상 및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더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그럼에도 장애유아들은 그동안 이원화된 교육· 보육 체계 아래서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 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 시설, 서비스 등 차별받는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 계속 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으로 평등한

05





출발선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논의는 전체 교육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보육계에서도 오랫동안 쟁점화되었던 사안임

- 새 정부의 교육·보육 정책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지금, 비장애아보다 더 불평등한 처지에 놓였던 장애영유아들의 현실이 논의에서 배제 되어서는 안 됨
- 이에 '유보통합' 논의가 장애영유아들에게 왜 중요한 이슈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들이 처한 교육·보육 현실은 어떠하며,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 논의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함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 이원화 체계 속 '차별교육' 받아

▮ 만 3세부터, 어린이집 다녀도 '의무교육' 대상 '간주'

-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뜻함
-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음
-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 ~ 5세 아동이 유치원 이 아닌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현행법은 '간주조항'을 만들어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을 유치원에서 받는 교육과 같은 것

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함

- 이 '간주' 규정을 제정한 바탕에는 장애유아들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겠다는 명목과 함께 어린이집으로 특수 교육 수요를 충당하겠다는 뜻을 내포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본다.

▮ 장애유아 2/3 어린이집 재원, 의무교육 '간주' 대상

표1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취원현황

(단위: 명)

연도	유치원(특수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영아, 유치부	일반 유치원 특수학급	계	장애전문 어린이집	장애통합 어린이집	계
2008	976	634	1,610	6,068	3,518	9,586
2012	863	1,138	1,970	5,994	3,656	9,559
2016	938	2,504	3,442	6,158	4,079	10,237
2020	1,041	3,866	4,907	6,206	4,959	11,165
2021	1,035	4,444	5,479	6,264	5,578	11,842

출처: 연도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06

한국장총

- 2021년 기준, 장애아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유아는 11,842명, 보육·교육 시설 재원 중인 장애아동 전체의 약 70% 내외가 의무교육 간주 대상임
- 이에 비해 유치원 재원 장애유아수는 5,371명임 유치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내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아동은 5,37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유치원보다 장애아 전문이나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약 2배 이상 많음
- 주요한 이유로는 유치워보다 어린이집이 더 장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임

▋ 이원화 체계 하 '독소'조항 변질, 교육 차별 심화

"장애아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가 발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특수교육법 안에서 의무교육 간주조항 때 문이다. 설령 간주조항이 있더라도 의무교육대상자에 대 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역할만 다 해도 이런 차 별적 상황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 기만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장애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조항을 없애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체계만 가져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 김윤태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2019 제4회 장애인아고라' 발언 중
-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으로 이원화된 체계 하에서 이 간주조항이 개입 하다 보니 장애유아들은 의무교육 대상임에도 정작 권리주체로서 누려야 할 것들에 차별을 겪고 있음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안에서

- "어린이집은 유치원 대비 시설,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배치, 교사처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음
- 이처럼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비교할 때 시설, 특수교사 및 치료사 등 전문인력 배치, 교사 처우, 장애 유아 1인당 교육비·교재교구비 및 급식비 지원금, 통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유치원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이로 인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교육-보육시설 간 처우 격차로 어린이집 특수교사 턱없이 부족

장애영유아와 일반영유아를 함께 교육하는 통합어린이집 원장 심모(45) 씨는 "4년제 대학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받았는데 누가 학사가 굳이 필요없는 보육교사와 동등한 처우를 받으며 어린이집에서 일하겠냐"라며 "봉사정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를 해줘야한다"라고 강 조했다.

- 나경연 기자(2020. 7. 17), "[르포] 장애 학부모 절절한 외침 "치료카페 전전…부족한 특수교사 해결해 달라"", 이투데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5%, 특수교사 배치규정 위반

-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의 존재 유무임
- 「특수교육법」상 유치원은 장애유아 4명 이상 재원 해야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고(특수교육법 에는 유치원의 경우 1~4인 1학급, 4인 초과하면 2개 이상 학급 신설하도록 규정), 4명당 유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에 따라 장애아



www.kodaf.kr



어린이집은 영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교사 2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군구 단체장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표2 지역별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미준수 현황

(단위: 명, 개소)

_	애전문어린 (총 176개:	–		애통합어린 총 1,190개	—
기관수	기관수 미준수 부족한 기관 수 특수교사 수		기관수	미준수 기관 수	부족한 특수교사 수
176	97 (55%)	205	1190	219 (18%)	238

출처: 보건복지부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2020년 국감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말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76곳 중 97곳(55%)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90곳 중 219곳(18%)도이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미달했음
- 특히 1,200여 개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715개소 (61%)는 특수교사가 1명도 없는 등 특수교사 미배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배치 인원 관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5명,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8명 등 총 443명이 부족 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보수, 근무시간 등 상대적 처우 열악해 취업 꺼려

- 특수교사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이면 에는 열악한 처우로 인 해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큼
- 2022년 기준, 유아특수교육 교사가 유치원에 취업할 경우 1년 차에 10호봉 2,608만 원부터

- 시작하지만, 보육기관은 1호봉 2,422만 원부터 시작, 대략 200만 원의 급여 차이가 남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실시한 '장애영유아 교육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총 16개 정책만족도 평가항목 중 유치원의 경우 2개만 평균 이하였으나, 특수학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11개 이상의 항목이 평균 이하였음
- 이를 통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교육 주체의 만족도가 유치원 교육 주체의 만족도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²
- 특히 유치원 임용인원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있던 특수교사조차 유치원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어 부족 현상 심화되고 있음
- 상황이 이러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 2월에 공문을 내려 특수교사 미배치를 이유로 장애아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 문제는 지금까지 유예상태 로 남아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특수교사 부족으로 양질의 교육 받기 힘들어

-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치원에는 담임으로 '특수 교사'가 배치되지만 어린이집에는 '장애영유아 를 위한 보육교사'가 대부분임
-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장애 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에 관련과목 8과목을 수강한 경우로 2~4년제에서 배출되고 있음
- 일반보육교사에 비해서는 장애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별도의 자격은 있지만 전문성에 있어 4년제 유아특수교육과를 나온 교사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임

¹ 최혜영 의원실(2020. 10. 7.), 보도자료 "장애아전문어린이집 55%, 장애아동복지법 특수교사 배치 규정 위반"

² 국가인권위원회(2017. 3.),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표3 육아교육, 보육제도 비교표

=	P분	유아교육	보육	
소	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성	상아동	만3~5세	만0~5세	
근거법령		유아교육법('05.1.30.)	영유아보육법('91.1.14.)	
	동대 사비율	 각 시·도 교육청 결정(서울시) 3세: 16인당 교사1인 4세: 22인당 교사1인 5세: 26인당 교사1인 원장재량으로 총정원내 연령별+4명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운영	명일수	수업일수 180일 이상/연	연중 무휴(공휴일 제외)	
운영	영시간	• 09:00~13:00 - 교육은 4~5시간 내 탄력적 운영 - 방과후과정(보호자 선택, ~17시)	• 7:30~19:30(12시간 운영원칙) - 기본보육(7:30~16:00) - 연장보육(16:00~19:30) - 야간연장, 24시간보육, 휴일보육	
설립	립방법	시·도 교육감이 인가 (유아교육법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시설	설 유형	국공립/사립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 단체등/직장/민간/가정/협동	
	자격 종류	유치원교사 1,2급, 준교사	보육교사 1,2,3급	
	자격 요건	학과제를 기본으로 자격부여 (최소 전문대 졸)	학점제 관련 교과목 이수 (3급은 최소 고졸)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총 72학점 (교직 22학점 이상 필수)	2급 총 51학점 3급 총 65학점	
	자격 검정	교육부장관 → 대학의 장(2급), 교육감(승급)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 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자격증 발급	자료없음	보육교사: 28,307명('19) *신규 취득자 수	
	교사 급여 국공립 336.4만원, 사립 207.5만원 * '14년 육아연 연구보고서 기준		(평균 213만원) 국공립 250만원, 민간 205만원 * '18년 보육실태조사 기준	
교사 처우			36만원(3~5세 담임, 유특회계) 24만원(0~2세 담임, 국비· 지방비) 비담임 교사는 지원없음	
	4대 4대 - 건강보험 - 국공립: 공무원연금, 사립: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공립(국가 50%, 보육교직원 50%) 민간(법정요율에 따라 고용주, 근로자부담) 	

자료: 보건복지부(2021), 3~5세 유아교육, 보육제도 비교(재가공) 3

02 교육·보육 인프라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 지역 간 편차도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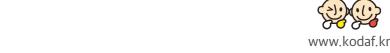
서울에 사는 회사원 김모(42)씨는 지난해 휴직계를 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다. (중략) 집 주변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7곳 정원이 다 찼기 때문이다. 일 단 특수학급에 빈자리가 나길 기다리지만 언제 날지 모르 는 상황. 김씨는 "중증인 아들을 밖에 데리고 돌아다니기 도 어려워, 답답하다고 할 때면 베란다에서 아이와 놀아준 다"라고 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조모(43)씨는 지난 3년간 자폐성 장애가 있는 딸을 4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으로 등원시켰다. 버스로 20분을 가고도 20분을 더 걸어 들어가야 해서 '버스 정류장을 하나만 더 늘려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다. 조씨는 "딸이 걷기 힘들어 울 때도 많았다"라며 "일곱 살 난 아이를 업고 가다가 너무 지쳐 길바닥에 주저앉아 같이 운 적도 있다"라고 했다.

- 김은경 기자(2022.5.21), '장애아동 16%, 유치원 의무교육 못받는다', 조선일보

▮ 장애아동 16%, 유치원 부족해 의무교육 못 받아

- 2021년 기준 만 3~5세 등록 장애 아동 수는 8,454명이며, 이 중 유치원 특수학급이나 특수 학교 내 유치원 과정에 다니는 아동은 5,371명 으로 64% 정도임⁴
- 비장애인 아동들과 함께 일반학급에 다니는 아동들(1,826명)도 있지만, 유치원에 등록을 못 해 집에 있거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등록 장애아동 기준 1,265명(16%)이나 됨
-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작년 기준 전체 8,660곳 중 1,001곳(11%). 초등학교(75%)·중학교 (60%)· 고등학교(46%)에 비하면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음



한국장총 kodaf.kr

연도별 증감 추세를 볼 때 2008년 165개소,
2012년 305개소, 2016년 567개소, 2021년
1,001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임

09

▮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1개뿐, 법정정원 초과도 다반사

- 국공립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특수교사를 배치 해주지만 사립 유치원은 직접 채용해야 함
- 장애 유아가 매년 들어올지 알 수도 없고 한 교실에 장애 유아 4명만 돌볼 교사를 채용하기엔 부담이 큼
- 특수학급은 세면장·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66㎡ (20평) 이상 교실이 있어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은 여건이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실제 특수학급이 있는 사립 유치원은 전국 3,599곳 중 1곳에 그침
- 새로 만들기 어렵다 보니, 기존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 중에는 한 교실 당 네 명인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음
- 교육부 유치원 현황 통계를 보면 작년 특수 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1,001곳 중 134곳이 정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음⁵

▮ 지역 간 천차만별, 특수학급 없는 곳도 있어

- 지역별로도 시설 현황에 차이가 나는데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 유일하게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이 아예 없었음
-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정원이 1~2명에 그쳐 60명이 넘는 만 2세 특수 교육대상 아동이 취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했음(2020년 기준)

-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장애영유아의무교육 학부모연대 주최 하에 제주교육청 앞에서 "59명 의 장애영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선택권도 없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권을 박탈했다"라며 제주 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음.



2021년 8월 17일 열린 시민사회단체 등 장애유아 의무교육 사항 위반행위 고발 기자회견 ⓒ 뉴제주일보

▮ 집 근처 어린이집 부족, 원정까지 가야 하는 현실

- 2021년 기준, 226개 시군구 3,491개 읍면동 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163개소, 통합어린이집은 885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의 경우, 약 7천여 명의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어린이집 404개소였으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25개 구 중 6곳, 8개소에 불과했음
-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보육 인프라가 있어야 하지만, 서울시만 보아도 19개 구에 사는 장애아동들은 다른 구까지 이동해야만 전문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실정임
- 그러다보니 원거리까지 통학하는 소위 맹모삼천 지교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기도 함

³ 박창현 외(2021), '유아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보육의 쟁점과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⁴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2021)';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2021)'

⁵ 김은경 기자(2022.5.21), '장애아동 16%, 유치원 의무교육 못받는다', 조선일보

⁶ 홍창빈 기자(2021.8.17.), "제주교육청, 만 3세 장애유아 의무교육 무시하며 차별", 헤드라인제주

- 실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9년 장애영유아를 둔 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학급)을 이용하며 겪는 가장 어려운 점 1순위로 '등하원 불편' (31.3%)를 꼽았음 7

▮ 4년 전 대비 어린이집 대기인원 2배 늘어

표4 연도별, 지역별 장애통합어린이집 대기 현황

	2016년 12월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777	938	1,019	1,048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2,052	2,591	3,687	4,060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2020년 국감 시 최혜영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보육시설 이용대상 장애아동 66,333명 중 26,785명(58%) 만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음
- 장애아동을 위한 교사가 있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10,490명 으로 22.6%에 그쳤음
- 부족한 보육시설로 인해 대기 중인 장애아동 수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777명이었던 대기 아동의 수가 작년 1,048명으로 늘었으며, 통합어린이집도 2016년 2,052명에서 4,060명 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음

각종 교육서비스 지원에서도 배제

(어린이집 재원중인) 장애유아 학부모인 최지현 씨는 "올 해 초 교육청 산하 기관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족체험, 학 부모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연락했다"라며 "연 수 프로그램의 경우 관내 공·사립 유치원의 학부모만 참 여할 수 있다며 죄송하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 이중삼 기자, '장애유아는 교육받을 권리 없나요?... "70%는 의무교육 못받아", 베이비뉴스, 2019. 4. 18

■ 특수교육대상 선정·배치 대상기관 어린이집 제외

- 장애유아는 원칙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아야 의무교육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방식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을 작성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하면 이들은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결정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식임
- 특수교육지원센터(교육청)는 관할 구역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장애영유아일 경우 즉시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배치해야 함
- 그럼에도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아 어린이집을 선정, 배치 대상기관에서 배제 시키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장애 영유아들은 의무교육에 따른 여러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실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의 부모교육 등 다른 지원에서도 자격이 되지 않음



www.kodaf.kr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배치통보를 받은 장애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장애아 어린이집에 다니겠다고 하자, 특수교육대상자 자격취소 신청서를 쓰게 한 사례도 있었음

▮ 각종 물적 지원과 교육 정보 제공에서도 소외

-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공문으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전달됨
- 양육자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발달장애 아동 가정은 특수교육 대상 선정이나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없음
- 유치원에는 학급당 교재교구비 지원금이 수백만원 책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는 아주 적거나 거의 없음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기 지원도 역시 받을 수 없음
- 현재 교육청에서 유치원 재원 장애아동의 부모 에게 치료지원비 및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나 어린이집 재원의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함
- 이렇듯 유치워생이냐 어린이집 원생이냐에 따라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에서 격차가 발생함



'유보통합', 이원화 모순 극복의 해법 되려면?

"장애든 비장애든 다 똑같이 교육받게 해야 한다', 그게 교 육권이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애유아를 교육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의무교육과 의무교육 비대상을 나누는 게 말이 안 돼요."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베이비뉴스 인터뷰 일부 발췌(출처: "특수교육법 간주조항은 '꼼수'… 평등권·공공성 모두 위반", 베이비뉴스, 2020.7.31)

■ 모순적·차별적 현실 해소 위해 유보통합 필요

- 앞서 살펴본 대로 장애영유아들이 처한 차별적 상황의 이면에는 바로 교육부와 복지부, 두 부처로 '이원화된 행정체계' 아래에서 부처 간 칸막이 문제, 모순적 상황을 야기하는 법 조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결국은 현재의 이런 모순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 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유보통합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음

▋복지 선진국 대부분 유보 일원화 체제로 운영

-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추세임
-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담당기관이 나뉘어 있음
- 반면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은 담당기관이 일원화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는 원래 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업무를 교육과학부로



12



- 이관함으로써 학교교육으로의 연계를 강화한 형태임
- 뉴질랜드는 그 이전까지 3개의 부처에서 담당 하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련 행정·재정 업무를 1986년부터 교육부로 통합했음
- 이후 10여 년간 교육과정 통합, 인력의 통합 등 각 부문별로 지속적인 통합정책을 추진하며 유보통합을 이뤘음⁸

▮ 재원 확보부터 상충관계 해소까지, 넘어야 할 산 많다

-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펴낸 '유보통합 정착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총 565명을 조사한 결과 "유보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률은 85.8%에 이르렀음⁹
-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 는 공감대는 높지만 관할 부처 통합부터 막대한 재원 문제 해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난제로 표류해왔음
- 정부 부처 통합만 두고도 '교육부로 통합' '복지부로 통합' '제3의 부처 통합' 등 의견이 갈리고, 교사 자격 통합을 위해선 날 선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임
- 2017년도 교사 자격 통합을 위한 보조 교육 프로그램 시행 움직임에 일부 유아 교육 전공자 (유치원 교사)들은 "사이버교육원 나온 사람들 (어린이집 교사)과 똑같은 급여 받으려고 4년 동안 4,000만 원 들여가며 공부한 건가"라고 반발했음
- 투입해야 할 재원도 만만치 않은데 2016년

- 육아정책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육 교사 급여를 사립 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연 1조 8,000억 원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오후반 교사를 배치할 경우 누리 과정에만 연 4,129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음 10
- 현재 유보통합을 바라보는 유아 교육계-보육계 간 입장 차이도 좁혀나가야 할 숙제임
- 유아 교육계는 유아교육체계 완성을 위해 0~5세 혹은 3~5세까지의 연령통합을 희망하고 있으며 통합내용은 유치원으로의 흡수통합임
- 반면 보육계는 양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0~5세
 통합을 희망하면서 규제와 지원은 현 유치원의
 수준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부처 일원화에 대한 부처 간 반발도 예상되는데 일례로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나 복지부로의 통합 또는 제3의 기관으로 통합을 논의해 왔지만 부처 간의 이견으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음 11
- "유보통합은 남북통일보다 어려울 것"이란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성급한 추진이나 용두사미 격이 되지 않으려면 예측 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동일 자격, 동일 처우로 장애 전문 교사 배치

- 이를 위해 먼저 유아특수교사의 수급 부족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유보통합 과정에서 모색돼야 함
- 앞서 살펴본 대로 동일 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급여와 근무조건 등 차이가 큼





- 이 때문에 어린이집 장애아동은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13

-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을 일원화하는 방안과 교사의 처우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의 구축이 보육과 교육 환경을 동질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보통합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요구됨
- 유보통합 과정에서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양성기관의 자격과 이수과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 관련 항목도 반드시 포함돼서 해결되어야함

▮ 장애아 1명만 있어도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지역에는 예외 조항을 두고 한시적으로 시설 규정을 완화해 장애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가령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립 요건으로 "미취학 장애아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현 기준을 완화하여 그보다 적은 인원이 재원 하더라도 인정해주거나 통합시설 지정과 관계없이지원구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사립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이는 일반 어린이 집이든 장애영유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유아 특수교사를 시·도 교육청에서 직접 선발하여 임시 파견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될 필요 있음 12

▮ 교사 자격 정비, 보수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표5 국내외 유아 교육·보육교사 자격 체계 13

국내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유교사 자격 제도

구분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근거법	유아교육법 제 22조 (교원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소관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자격구분	[준교사]-2급-1급-(수석교사)- 원감-원장	3급-2급-1급-원장
이수연한	2-4년	별도 이수 연한 없음
최소학력	전문대학 졸업(이상)	고등학교 졸업(이상)
양성 방식	학과중심제 [유아교육과, 아동 관련학과(일정 비율)]	학점 이수제
양성기관	2-3년, 4년제 대학(2급)	2-4년제(사이버, 학점은행제 포함) 대학(2급) 보육교사교육원(3급)
전공영역 50학점 이상, 이수 과목 교직영역 22학점 이상 (총 72학점 이상)		2급:17과목 51학점 이상 3급: 22과목 65학점 (교직과목 미포함)

국외 유아교사 자격체계

국가	교원 자격	통합 여부	담당 부서	담당 연령	양성 체계	ISCED 수준
노르 웨이	preschool teacher	0	교육부	0-5세	3년 전문대	ISCED 5
덴마크	Pedagogue (Day nursery)	0	704	0-3세	3, 5년 전문대	ISCED 5
덴미그	Pedagogue (Kindergarten)	0	교육부	3-6세	3, 3인 선군대	ISCED 5
	Nursery nurse	·			고등학교 졸업	ISCED 3
스웨덴	preschool teacher	х	교육부	1-6세	4년제 대학	ISCED 6
	보육교사		교육부	0-5세	3년대학	ISCED 5
핀란드	유아학교 교사	Х		6세	4년제 대학 또는 석사	ISCED 6
뉴질	Playcenter leader	v	교육부	고등학교 졸약 0-5세 3년대학	고등학교 졸업	ISCED 3
랜드	kindergaten teacher	Х	<u> </u>		3년대학	ISCED 5
영국	Early year educator			0-5세	고등학교 졸업	ISCED 3
	Early year teacher	Х	교육부		4년제 대학	ISCED 6

¹² 이정림 외(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⁸ 이지현 기자(2017. 6. 11.),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오늘 끝장토론 쟁점은?', 이데일리

⁹ 김연주·김성모기자(2017.6.12.), 20년 제자리걸음 '유보통합', 속도낼까, 조선일보

¹⁰ 최윤경 외(2016), '유보통합 패러다임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 재정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¹¹ 이지현 기자(2017. 6. 11.),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오늘 끝장토론 쟁점은?', 이데일리

¹³ 김은영(2022), '제2차 KICC 유아교육·보육통합특별포럼 "새 정부의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II)"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14

일본	보육사		후생성	0-2세	3년 전문대	ISCED 5
일돈	유치원교사	0	문부성	3-5세	3년 선군네	
프랑스	Educateur de jeunes enfants		사회복지 건강부	0-2세	3년 전문양성과정	ISCED 5
	Professeur des ecoles	Х	교육부	3-5세	석사	ISCED 7

- 현행 이원화 양성체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관련 제도 정비와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 등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수반 되어야함
- 구체적으로 양성체제 관련 자격증 발급 소관 부처(서)를 기존 부처(서) 한곳으로 통합 할지 혹은 제3의 기관을 둘지, 자격체계는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 자격 부여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추후 교육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구하여 더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것임

▮ 장애영유아 관련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가 먼저

-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공통된 최소 지원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어린이집 등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나,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1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장애영 유아에 대한 정확한 교육·보육 실태조차 파악 하기 힘든 실정임
- 연차별 특수교육통계는 초·중·고의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등을 대상 으로 하며,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엔

특수교육 대상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집계 에서 제외됨

한국장총

- 마찬가지로 보육통계에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재원 장애유아는 집계에서 제외됨
- 지난해 5월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전 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특수교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특수교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력 증원, 어린이집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통한 충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현 정부로 공이 넘어간 만큼 재원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공통의 지표를 적용한 장애영유아 교육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주길 바람

▋ 유보통합추진위 내 장애계 소통창구 필요

- 유보통한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대책도 포함돼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러기 위해선 장애영유아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장애계 소통 창구가 필요함
- 구체적 방안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시 장애아동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장애아동 교육·보육 핵심 과제를 논의에 포함시켜야 함
-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 위원회에 장애아동 유보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한 사람도 없었고 관련 과제도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음
- 본격적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가동하기 전에 장애아동 유보통합 관련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장애아유보통합추진 위원회'(가칭)를 별도 구성, 운영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이 핵심이다

15

-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도 여전히 일각에서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만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교육부 관할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반대의견 또는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
- 20여 년간 이어져온 유보통합 논쟁에서 정작 당사자인 영유아, 특히 장애영유아들의 권리 보다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고우면 (左顧右眄)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음
- 지난 여러 차례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볼 때,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현장 당사자들의 강력한 연대와 활동이 가장 중요함
- 실례로 뉴질랜드의 경우, 보육노동자노조와 유치원연합노조가 통합유아노조를 설립하고 부모들과 일반 시민들이 연대 활동하여 유보 통합이라는 결실을 이루었음
- 이 사례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보육·유아교육 전문가와 부모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줌
- 각계에서 이해관계를 떠나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당사자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특히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열외에 놓였던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장애계가 관심을 갖고 유보통합 정책이 나아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중론을 모으길 바람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이틀 앞둔 2019년 4월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유아 의무교육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2019.4.18.)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2년 5월 31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전국 일잘러 양성소! 업스쿨로 오세요!

-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 전자책 제공 X 매뉴얼 저자직강 -



🏈 기초과정

기초튼튼 실무자매뉴얼 8종 교육

장애인단체 바로알기	장애이해	행정실무	보고서 작성
언론홍보 · SNS 마케팅	재무회계	노무관리	감사대비

- 대상: 전국 장애인단체 신입 실무자
- 일정: ■상반기: 5. 26.(목) 27.(금) / 온라인 ■하반기: 9. 1.(목) 2.(금) / 오프라인(이룸센터)

알심화과정

<u>식력쑥쑥 식무자매뉴얼</u> 4종 심화교육

- 대상: 전국 장애인단체 경력 실무자
- 일정: ■상반기: 6. 23.(목) 24.(금) / 온라인 ■하반기: 10. 13.(목) 14.(금) / 오프라인(이룸센터)
- 기초과정(2회)과 성장과정(2회)은 상·하반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커리큘럼과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실무자매뉴얼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 현안토론과 네트워킹을 위한 1박2일 성장과정(7월, 11월)도 기대해주세요!

신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채널 "역량강화교육_업스쿨" 문의: 카카오톡채널 1:1 채팅 또는 02-783-0067



